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4-12-08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 제 2 1 민 사 부

#### 판 결

사 건 2012가합698 손해배상(기)

원 고 별지 기재와 같다.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2012. 8. 16.

판 결 선 고 2012. 9. 27.

#### 주 문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 14.부터 2012. 9. 27.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계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저축은행이고, 원고들은 피고 저축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예금자들이다.

나. 2011. 9. 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3에 따라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B은 2011. 9.경 원고들에게 2011. 9. 18.을 기준으로 약 200만 원 내지 3억 원의 각 종합대출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된 채권채무 잔액 조회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들은 2011. 10. 초경 위 조회서 하단의 확인통지 난에 위와 같은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인 C, 대표이사이자 행장인 D, 전무인 E는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89799, 94930호로 '공모하여 2004. 11. 24.경부터 2011. 7. 22.경까지 피고의 예금고객 또는 중도금 상환자 등의 거래자 명단 중에서 임의 선정한 총 11,663명의 차주명의를 도용하여 합계 124,733,600,000원의 신규대출을 발생시킨 다음, 기존 차명주주 명의의 차명대출금을 변제·소멸시킴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가 관리하던 예금자 및 대출 차주의 거래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인적사항을 저축은행 전산시스템 대출용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전산상 가장대출을 발생시킴으로써 피명의도용자들의 거래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라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



임)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고, D과 E는 위 사건에 관한 각 2011. 9. 26.자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 피고 저축은행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그 대출금으로 피고의 채무를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C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피고가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그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용정보를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의 일환으로 가장대출을 발생시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의 · 과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 가장대출은 피고의 내부 전산망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개



인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원고들은 피고의 영업정지 이전에는 이 사건 가장 대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장대출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발생할 가능성도 없으며, 가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C, D, E 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충분히 전보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나.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 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으나, ② 피고는 그 업무를 목적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고객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고, 피고의 회장인 C, 대표이사인 D, 전무인 E 등(이하 'C 등'이라 한다)이 원고들의 개인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원고들의 동의 없이 본래의 수집 목적과 관계없는 용도로 이용하여 전산상 대출이 발생한 것처럼 처리(이하 '이 사건 가장대출'이라 한다)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원인을 모르는 채 대출금이 존재한다는 통보를 받고 이를 다투기 위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및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C 등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위 손해배상책임은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킨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시켜 해석할 근거가 없고, C 등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전보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다. 정신적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대출이나 신용 관련 정보는 그 개인의 경제·사회활동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민감한 정보인 점, ②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고객들의 신용과 관련된 업무, 여신 및 수신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위와 같이 중요하고 민감한 고객들의 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의 임원들인 C 등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최소 1만 명 이상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조작하여 약 1,247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의 이 사건 가장대출을 발생시킨 점, ④ 이 사건 가장대출이 비록 피고 저축은행 내부 전산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대출금의 존재를 통보받을 당시 그런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5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2. 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이 선고되는 날인 2012.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끊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4-12-08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승록

판사      서영호

판사      지현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4-12-08

별지

### 원고의 표시

(원고의 표시 삭제)